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65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차규근
이해민 · 강경숙 · 김준형
신장식 · 서왕진 · 김선민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그 집행을 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법률 제 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본문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을 “보호관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구인) ① (생 략) ② 제1항의 구인장은 <u>검사의</u> <u>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u> 집 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u>보호관찰</u> <u>관</u> ----- ---. ----- ----- ----- --.